

##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11월 1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시장(도시주택국장)
-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1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3년 12월 13일) :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엽 도시주택국장)

### □ 제안이유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사유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면 적 (천㎡)	집 행			미집행		
			개소	면적 (천㎡)	%	개소	면적 (천㎡)	%
계	1,419	104,192	1,395	101,542	97.5	24	2,650	2.5
교통시설	800	37,536	787	37,415	99.7	13	121	0.3
공간시설	229	23,776	223	23,192	97.5	6	584	2.5
유통·공급시설	164	4,154	164	4,154	100.0	-	-	-
공공문화·체육시설	132	14,083	127	12,138	86.2	5	1,945	13.8
방재시설	71	20,643	71	20,643	100.0	-	-	-
보건위생시설	5	1,166	5	1,166	100.0	-	-	-
환경기초시설	18	2,834	18	2,834	100.0	-	-	-

※ 구·군 관리시설 제외

## ○ 단계별 집행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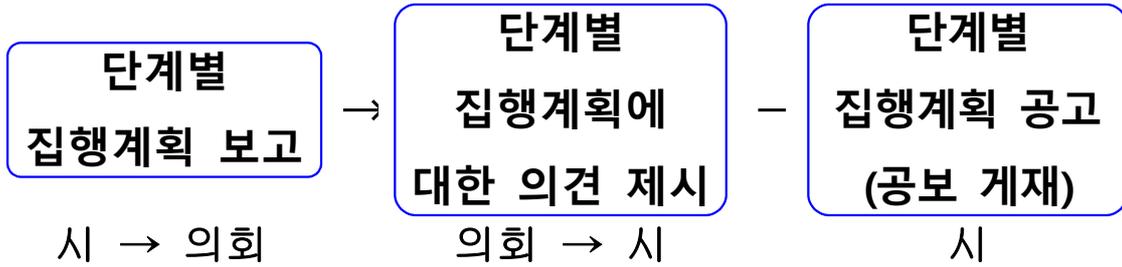
구 분	합 계			단계별 사업비							
	개 소	면 적 (천㎡)	금 액 (억원)	1단계(2024~2026)			2단계(2027~)				
				개소	면적 (천㎡)	금액 (억원)	개소	면적 (천㎡)	금액 (억원)		
총 계	21	748	4,229	1	32	422	20	716	3,807		
집행방식별 사업비	재정적	계	10	648	2,785	1	32	422	9	616	2,363
		도 로	5	72	686	-	-	-	5	72	686
		광 장	1	67	542	-	-	-	1	67	542
		공 원	2	466	707	1	32	422	1	434	285
		학 교	2	43	850	-	-	-	2	43	850
	비재정적	계	11	100	1,444	-	-	-	11	100	1,444
		도 로	8	49	946	-	-	-	8	49	946
		공 원	3	51	498	-	-	-	3	51	498

※ 우리 시, 시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는 시설 2개소[경북대학교 칠곡캠퍼스, 체육시설(골프장)], 집행계획 없는 학정지구1고등학교는 제외

※ 1·2단계에 걸쳐 계획된 시설 수 : 1개소(수발공원)

□ 참고사항

○ 보고 및 처리절차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익)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대구시의 도시계획시설 1,419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4개소이나,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는 시설 2개소와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 1개소를 제외한 21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재정적 집행시설은 10개소, 공공기여 등 민간 재정으로 추진하는 비재정적 집행 시설은 11개소임.

-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 내역을 보면, 2026년까지 집행예정인 1단계 사업은 1개소 422억원으로 달서구 도원동 소재 수발공원이 해당되며,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됨에 따라 1단계 422억원, 2단계 58억원이 집행될 예정임.
- 2단계 사업은 20개소 3,807억원으로 도로 13개소, 광장 1개소, 공원 4개소, 학교 2개소이며, 이 중 비재정적 사업은 11개소로 도로 8개소와 공원 3개소임.

####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법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집행계획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단계 사업 20개소 중 6개소는 2029년 이전에 실효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2029년 이후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토지소유자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허용행위(가설건축물 건축과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실효시기를 초과한 사업기간 설정 사업 현황

시 설 명	실 효 시 기	사 업 기 간
중로1-275	2025년	2-2단계(29년 이후)
중로1-241	2026년	"
중로1-276	2026년	"
중로1-76	2025년	"
명곡체육공원	2028년	"
월배1고	2024년	"

- 지난해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집행계획에서 1단계 (2024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던 월배1고등학교가 이번 집행 계획에서는 2단계(2029년 이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수발공원의 사업기간이 지난해 계획 대비 1년 순연되었으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등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만큼 추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극적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2029년 이전에 실효시기가 도래하는 시설의 사업기간을 2029년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실효시기가 되어 실효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인 2029년 이후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한 것임.
○ 월배1고등학교가 작년에는 1단계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올해 2단계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 지난해 계획 수립 시에는 실효시기에 맞춰서 1단계로 설정했으나, 올해에는 실제 집행가능한 시기로 설정함에 따라 2단계로 변경된 것임.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